

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04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21.

발 의 자 : 강경숙 · 김선민 · 서왕진  
차규근 · 정춘생 · 김예지  
강득구 · 김준형 · 백선희  
박은정 · 황운하 · 김재원  
이해민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, 유치원,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,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, 국제학교, 외국교육기관, 특수교육 지원센터 등은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등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하거나 파견하는 경우 모집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간제교사 등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상황임.

이 경우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,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교육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아동 관련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가.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, 국제학교, 외국교육기관, 특수교육지원센터,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교육감이 설치하는 교육기관을 추가함(안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 제1항 및 제29조의4).

나.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취업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(안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6항 신설).

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3제1항제18호 중 “학습부진아 등”을 “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9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4항 및 제5항”을 “제4항부터 제6항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한다.

29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
30.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
31.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
32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

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(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)

33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중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.

1. 제1항제8호의 유치원

2. 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

제29조의4제3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. 제29조의3제1항제29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

제29조의4제4항제3호 중 “학습부진아 등”을 “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29조의3제1항제30호의 국제학교

7. 제29조의3제1항제31호의 외국교육기관

8. 제29조의3제1항제32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

9. 제29조의3제1항제33호의 교육기관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





<신 설>

<신 설>

② ~ ⑤ (생 략)

<신 설>

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  
기관 중 「유아교육법」 제2  
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 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 
따른 각급 학교에 상응하는  
외국교육기관

32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 
육법」 제11조에 따른 특수교  
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  
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  
스를 제공하는 기관(대표자  
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  
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하  
다)

33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 
률」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 
교육기관 중 아동을 대상으로  
교육을 실시하는 기관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 
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 
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에 대  
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  
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  
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 
있다.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

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·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의4(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·확인) ①·② (생략)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

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.

1. 제1항제8호의 유치원
2. 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

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⑧ -----제7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29조의4(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·확인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

<p>육을 실시하는 기관</p> <p>4.·5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⑤ ~ ⑦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제29조의3제1항제30호의 국 제학교</u></p> <p>7. <u>제29조의3제1항제31호의 외 국교육기관</u></p> <p>8. <u>제29조의3제1항제32호의 특 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</u></p> <p>9. <u>제29조의3제1항제33호의 교 육기관</u></p> <p>⑤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